

울산지방법원 2024. 3. 26 선고 2023가단12527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27.

판 결 선 고 2024. 3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8. 28.부터 2023. 9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21. 4. 10. 피고와 양산시 C건물 D호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

임대차보증금 3억 원,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2023. 8. 27.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.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대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. 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날인 2023. 8. 28.부터 이 사건 소장(지급명령신청서) 송달일인 2023. 9. 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동욱